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3. (생략) <신설> ④ (생략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3. (현행과 같음) <u>4. A클래스 :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</u> 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C클래스 수익증권 2. W클래스 수익증권 3. I클래스 수익증권 <신설> ②~⑤ (생략)	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C클래스 수익증권 2. W클래스 수익증권 3. I클래스 수익증권 <u>4. A클래스 수익증권</u> ②~⑤ (현행과 같음)
제40조(보수) ①~② (생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~ 3. (생략)	제40조(보수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	<u>4. A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7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
제41조(판매수수료) <u>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	제41조(판매수수료) <u>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</u> <u>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u> <u>1. A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3 이내</u>
제43조(기타 운용비용 등) ①(생 략) ②제1항에서 “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~8. (생 략) <u>9.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</u> <u>10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</u> ③ (생 략)	제43조(기타 운용비용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에서 “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~8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<u>9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</u>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/u>